

유엔 어린이 .청소년 권리 조약 이행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 최초 보고서<sup>1</sup>

1994.

大韓民國政府

---

<sup>1</sup> 유엔문서번호 CRC/C/8/Add.21 30 November 1994.

## 1. 서론

1. 대한민국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이해의 폭을 점차 넓혀 가고 있으며, 아동을 물질적 및 정서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이해와 노력의 목적은 ‘모든 어린이가 차별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니고, 나라의 앞날을 이어나갈 새사람으로 존중되며, 바르고 아름답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 전문)하는 데 있으며, 그들이 자라나 ‘조국 발전의 일꾼이 되어, 세계와 우주로 힘차게 나아가 인류의 자유와 행복을 이룩’ (청소년 헌장 전문)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2.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의 정신은 대한민국이 받아들이고 있는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과 서로 일치하는데, 이는 아동과 관련된 여러 법적, 제도적 및 행정적 조치의 여러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전문과 11 개 조항의 본문으로 이루어진 ‘대한민국 어린이헌장’에서 아동이 누려야 할 기본적 인권에 대한 존중을 명시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은 어린이날의 참뜻을 바탕으로 하여, 모든 어린이가 차별 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니고, 나라의 앞날을 이어나갈 새사람으로 존중되며, 바르고 아름답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함을 길잡이로 삼는다.

1. 어린이는 건전하게 태어나 따뜻한 가정에서 사랑 속에 자라야 한다.
2. 어린이는 고른 영양을 취하고,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받으며, 맑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야 한다.
3. 어린이는 좋은 교육 시설에서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4. 어린이는 빛나는 우리 문화를 이어받아. 새롭게 창조하고 널리 퍼 나가는 힘을 길러야 한다.
5. 어린이는 즐겁고 유익한 놀이와 오락을 위한 시설과 공간을 제공받아야 한다.
6. 어린이는 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한겨레로서 서로 돕고 스스로를 이기며, 책임을 다하는 민주 시민으로 자라야 한다.
7. 어린이는 자연과 예술을 사랑하고 과학을 탐구하는 마음과 태도를 길러야 한다.
8. 어린이는 해로운 사회 환경과 위험으로부터 먼저 보호되어야 한다.

9. 어린이는 학대를 받거나 버림을 당해서는 안되고 , 나쁜 일과 힘겨운 노동에 이용되지 말아야 한다.
10. 몸이나 마음에 장애를 가진 어린이는 필요한 교육과 치료를 받아야 하고, 빛나간 어린이는 선도되어야 한다.
11. 어린이는 우리의 내일이며 소망이다. 나라의 앞날을 짊어질 한국인으로, 인류의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세계인으로 자라야 한다.

4. 전문과 5 개조항의 본문으로 이루어진 ‘청소년헌장’은 인류의 자유와 행복을 이룩할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소년은 새 시대의 주역이다.

뜨거운 정열을 가슴에 품고 자연과 학문을 사랑하며, 한마음으로 굳게 뭉쳐 조국 발전의 일꾼이 되어, 세계와 우주로 힘차게 나아가 인류의 자유와 행복을 이룩한다.

여기에 우리 모두가 나아갈 길을 밝힌다.

1. 청소년은 출생, 성별, 학력, 직업, 그리고 정신적 조건에 따른 어떤 차별도 받지 않는다. 모든 청소년은 적성과 능력을 갖고 닦아 스스로 어려움을 헤쳐 나아가는 슬기와 용기를 갖춘다.

1. 가정은 청소년이 정서를 갖추고 애정과 대화를 나누는 곳이다. 아버지는 올바른 삶의 본을 보이며, 자녀는 어른을 공경하는 몸가짐과 밝은 성품을 익힌다.

1. 학교는 청소년이 조화로운 배움을 통하여 교양과 지식과 체력을 기르는 곳이다. 자질을 존중하고, 자아 실현을 통하여 삶을 윤택하게 하는 길을 가르치며, 문화 의식과 민주 시민 정신을 높인다.

1. 사회는 청소년이 즐겁게 일하며 보람있게 봉사하는 곳이다. 성장과 발달을 도와주며, 더불어 사는 기쁨과 여가 선용의 마당을 제공하고, 건전한 환경을 만든다.

1. 국가는 청소년을 사랑하고, 이들을 위한 정책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인다. 배움터와 일터를 고루 갖추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 개개인을 각별히 보호하여 적응하고 자립하도록 이끈다.

5. 지난 30 년간의 경제 사회발전과 함께 이루어진 의료, 보건 분야의 성장은 산전진찰률(95%)과 시술분만율(99%)의 증가와 태아사망률의 급속한 하락(인구

1 천 명당 12.8 명)을 가져왔다. 또한 전국민 의료 보험 제도는 아동이 건전하게 태어나서 튼튼하게 자랄 수 있는 의료 보장의 기틀을 만들어 주고 있다.

6. 대한민국에서의 교육은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었으며, 전통적으로 가장 중시되는 가치중의 하나이다. 대한민국은 9 년간의 교육을 의무 교육으로 정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아동들이 학업을 계속하고 있다(1993 년 4 월 현재 중학교 진학률 99.9%, 고등학교 진학률 99.1%). 정부는 이러한 교육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7. 한국의 아동복지법은 조약의 원칙을 반영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은 1961 년에 한국 전쟁을 전후하여 발생한 많은 빈곤 아동, 전쟁고아, 부랑아, 비행아 등 사회적 보호를 요하는 아동들을 위하여 제정되었다. 1960 년에 이후의 경제 성장은 사회전역에 걸쳐 물질적인 복지 환경이 향상을 가져왔으나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발생한 이혼, 별거, 유기, 학대와 같은 가정 해체 현상으로 인하여 새로운 유형의 요보호 아동들이 발생하게 되었고, 기혼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일반 아동들의 양육 문제가 크게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81 년에 1961 년의 ‘아동복지법’을 전면 개정하여 요보호 아동 중심의 정책과 병행하여 일반 아동들의 건전 육성과 복지의 적극적인 추진을 기본 정신으로 담게 되었다.

8. 대한민국에 있어서 아동의 권리가 절대적으로 보장받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정부는 아동이 권리 신장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며 여러 민간 단체들도 아동의 권리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의 조항들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정부는 아동의 이익이 우선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행정적 조치를 앞으로도 꾸준히 실천해 나갈 예정이다.

9. 1990 년 0-17 세의 아동 인구는 13,752,575 명으로 전체 인구의 31.7%를 차지하고 있으며, 남자 아동이 여자 아동보다 많아 107.3 의 성비를 나타낸다. 아동 인구는 점차로 감소하여 2000 년에는 1,200 만 명(전체 인구의 26%), 2010 년에는 1,100 만명 (전체인구의 23%)이 될 것으로 추계된다.

<표 1> 아동 인구

(단위:천명)

	1980	1985	1990	1995	2000
전체인구(A)	37,407	40,420	43,390	44,851	46,789
아동인구(B)	15,219	14,844	13,752	12,802	12,037
(B/A, %)	(40.7)	(36.7)	(31.7)	(28.5)	(25.7)
0 세	755	611	632	673	669
1-5 세	3,840	3,929	3,313	3,304	3,363
6-11 세	5,486	4,763	4,877	3,956	3,947
12-17 세	5,138	5,541	4,930	4,868	4,058

## 2. 제 1 장 협약 이행을 위한 일반 조치

10. 대한민국은 1990 년 9 월 2 일에 발효된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 에 1990 년 9 월 25 일에 서명을 하였고, 협약에 나타나고 있는 내용 중에서 현행의 관련법들과 저촉되고 있는 일부 조항들에 대하여 유보하는 방식을 취하면서 1991 년 12 월 20 일부터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 ‘의 당사국이 되었다.

11. 대한민국이 유보하고 있는 협약의 조항은 제 9 조 3 항, 제 21 조 가항, 그리고 제 40 조 2 항 나호(5) 등이다. 협약의 제 9 조 3 항은 부모와의 면접 교섭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민법 제 837 조의 2 는 부모의 면접 교섭권만을 보장하고 있을뿐 아동의 면접 교섭권은 보장하지 않고 있다. 입양에 관한 협약에서는 관계당국의 허가에 의한 입양만을 인정하고 있으나(제 21 조 가항), 대한민국의 민법 871 조는 부모가 입양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민법 제 878 조와 제 881 조에서는 호적법에 따른 신고만으로 입양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협약의 제 40 조 2 항 나호(5)에서 보장하고 있는 상소권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에서는 헌법 제 110 조 4 항 및 군사법원법 제 534 조에 의하여 비상 계엄하의 군사 재판에서 단심제가 인정되고 있다.

12. 대한민국이 유보하고 있는 협약의 조항들이 대한민국 아동의 인권 현실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협약에서 요구하고 있는 아동의 권리를 보다 잘 실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협약에서 유보하고 있는 조항들에 대하여 법적, 제도적 행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13. 협약은 그 안에 제시하고 있는 아동 권리의 내용들에 대하여 당사국이 그 나라의 모든 국민에게 홍보할 의무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대한민국은 아직 아동 권리 협약의 내용에 대한 홍보를 위하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1993 년 발족된 국제연합 아동기금(UNICEF) 한국위원회는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의 내용에 대한 홍보 활동을 1994 년 활동에서의 중점 과제로 삼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재정과 민가능력 통하여 조성된 기금이 쓰여질 예정이다.

#### 제 1 절 협약의 규정과 국내법 및 정책의 조화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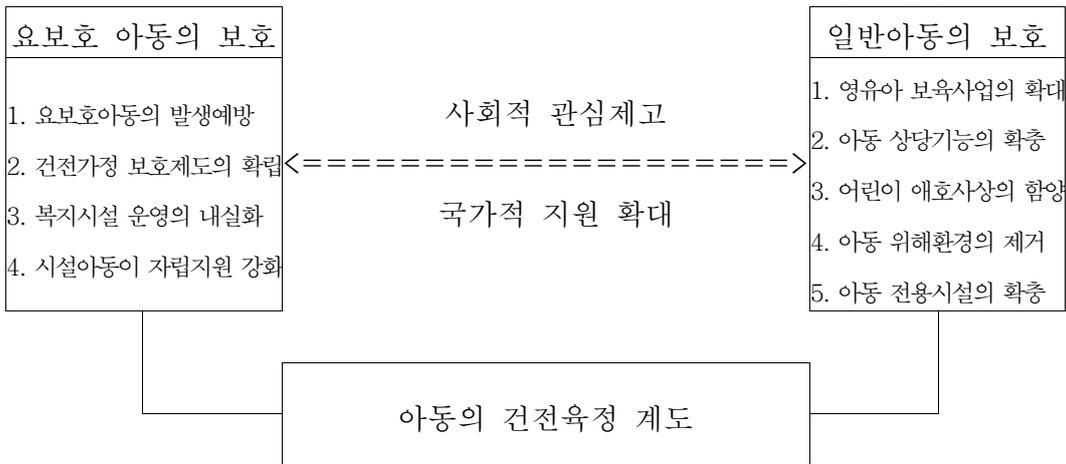
14. 대한민국은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기 전부터 이미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1981 년 에 개정된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이 건전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건강하게 육성되도록 그 복지를 보장’ 하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명시하여, 전체 어린이가 아동 복지의 대향이 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1957 년에 선포하고 1988 년에 개정된 ‘대한민국 어린이헌장’에서는 ‘모든 어린이가 차별 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니고 나라의 앞날을 이어나갈 새사람으로 존중되며 바르고 아름답고 씩씩하게 자라나’ 기 위한 어린이의 권리를 선언하고 있으며, 1990 년에 선포한 ‘청소년헌장’에서는 새 시대의 주역인 청소년이 인류의 자유와 행복을 이룩할 수 있도록 성장하는데 필요한 청소년의 권리를 선언하고 있다.

15.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사국의 의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이 시행한 주요 조치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한민국은 1990 년 9 월 30 일 국제연합 아동기금 주관하에 개최된 ‘어린이를 위한 세계정상회담’에서 채택한 ‘1990 년대 어린이의 생존, 보호 및 발달을 위한 세계정상선언과 행동계획’에 1991 년 6 월에 서명하였고, 이 행동계획에서 요구하고 있는 ‘자국 어린이들을 위한 1990 년대 행동 프로그램의 작성 및 시행’을 위하여 1992SS 2 월에 ‘한국 아동복지 10 개년 계획서’를 국제연합에 제출하였다. 한국의 입장에서 행동계획의 초점은 다음과 같다: ①어린이 보건의 향상, ②안전한 물 공급, ③식품 위생과 영양, ④교육의 증진, ⑤모자 보건의 향상 및 가족계획, ⑥저소득층 어린이를 위한 무료 보육 사업, 그로 어린이 및 청소년의 보호, ⑦어린이 전용 시설 확충, ⑧장애 어린이의 복지 증진 ⑨불우어린이 지원.

16. 대한민국은 아동을 위한 1990년대 행동 프로그램을 1992년부터 1996년까지 진행될 제 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의 아동 복지 부문에 포함시키고 있다. 협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노력은 제 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아동 복지 정책의 기본 방향에서 구체화되고 있는데, 아동이 건전 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의 지원을 확대하면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17.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협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아동의 권리가 대한민국에서 전적으로 실현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특히 아동의 권리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여러 민간 단체들은 아동권리의 실현을 위해 질적인 차원에서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사회가 오늘날 경험하고 있는 급속한 변화에 따라 새로운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정책도 매우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림 1> 7차 경제사회개발계획에서 아동 복지의 기본 방향



제 2 절 아동 관련 정책의 조정 및 협약 이행 사항의 모니터링을 위한 기관

18.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국가 정책은 정부의 여러 부처에서 수립되고 시행된다. 그러나 보건사회부가 아동 관련 정책의 주무 부서로 아동 복지와 관련되는 정책을 주로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청소년 관련 정책은 문화체육부에서 총괄하고 있다.

19. 보건사회부의 가정복지심의실 산하의 아동복지과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아동복지과의 주요 기능은 : ①요보호 아동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상담사업, ②소년소녀 가장 세대의 보호, ③국내 입양 사업, ④불우 아동을 위한 결연 사업 아동 복지 시설에서 성장하여 퇴소하는 연장 아동에 대한 자립 지원서비스 등이다. 보건사회부에 설치된 중앙아동복지위원회와 지방아동복지위원회는 아동 복지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을 조사·연구 및 심의하고 있다.

20. 문화체육부의 청소년정책실이 청소년 육성 정책을 총괄한다. 1991년 12월 31일 개정되고 발효된 청소년기본법이 청소년 기본계획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법적 기반이 되고 있다. 이의 주요한 기능은 : ①청소년 육성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②청소년 시설의 지원과 확충, ③청소년지도자 양성, 훈련 및 지원, ④청소년 환경개선, ⑤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용.

21. 교육부는 아동과 청소년을 지도하고 훈련하기 위한 교육제도를 관장하고 있다.

22. 법무부에서는 합동 단속반을 편성·운영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저해하는 환경 요인을 제거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 범죄자에 대해서는 소년원 및 소년감별소를 두어 보호 처분에 의하여 송치된 소년과 법원의 조사 및 관리를 위하여 가위탁된 소년이 수용보호, 교정 교육 및 감별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게 하여 보호 소년을 교정 및 교화하여 사회에 복귀시키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3. 아동 권리와 관련된 가정법원의 역할을 주로 가정의 문제를 조정하는 데 있으나, 조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심판을 내리게 된다. 특히 조정의 방향은 아동 복지의 이념과 부합되도록 하고 있다.

24. 노동부는 아동 권리의 증진을 위한 직업 훈련, 취업 알선, 각종 문화 활동 지원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25. 아동 관련 정책 개발을 위하여 정부의 출연 기관에서는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1989년에 개원한<한국청소년연구원>은 청소년의 보호, 육성, 선도 등에 고나한 조사 연구, 청소년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청소년 지도자의 연수 등을 주된 기능으로 하공 Lt 다. <한국교육개발원>은 한국의 전통과 현실에 알맞은 새로운 한국적 교육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교육의 목적, 내용, 방법등에 관한 E 종합적이고 과학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한국이 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제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혁신적인 교육체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교육방송도 실시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국민의 보건, 사회복지, 그리고 인구에 관련된 정책연구를 통하여 합리적인 보사 정책에 기여하고자 설립되었다. 특히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가족정책연구실에서는 아동 복지 정책에 관한 일반적인 연구 외에 입양 및 보육사업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여성과 관련된 문제에 관한 조사 연구, 여성이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 훈련 및 여성의 사회참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여성개발원>에서도 아동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 특히 취업여성이 자녀 양육지원 방안과 정책 대안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26. 대한민국에는 어린이 및 청소년 관련이 여러 민간 단체 및 기관들이 아동이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활동하고 있다. 아동의 교육과 관련된 단체로는 전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학원총연합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한국아동복지시설협회, 한국영유아보육원시설협회, 한국부녀복지 연합회 등이 있다.

### 3.제 2 장 아동의 정의

27. 대한민국에서의 아동은 아동복지법에서 ‘18 세미만의 자’ 로 정의하고 있다.<sup>2</sup> 생활보호법에서는 18 세 미만의 아동은 인생에서의 양호한 출발을 위해 보호되어야 하며, 물질적·정서적 요구가 충족되어야만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28. 대한민국에서는 “만 20 세로 성년이 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20 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국민 투표권, 대통령 선거권,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권을 갖지 못한다.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정 대리인이 되고,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행사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후견인을 두게 되는데, 미성년자의 재산에 대하여는 법정 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이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

<sup>2</sup> 현재 우리나라 법에서 아동과 유사한 연령층을 지칭하는 법적 용어로는 미성년자(민법, 미성년자 보호법), 연소자(노동법), 소년(소년법), 청소년(청소년복지법) 등이 있다. 이 가운데 미성년자와 소년은 ‘20세 미만인 자’이며, 아동과 연소자는 ‘18세 미만인 자’이고, 청소년은 ‘9~24세인 자’를 말한다.

29. 아동은 노동 계약 관계에 들어갈 수 없다. 연소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규정들이 존재한다. 근로 기준법에서는 18 세 미만자에 대해 취업할 수 있는 업종을 제한하고 있으며, 13 세 미만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직종을 지정하여 발행한 취직인허증을 가져야만 취업이 가능하다. 이때의 노동은 아동의 건강이나 발전, 학교 교육에 해가 되지 않는 것이야만 한다.

30. 대한민국의 아동에 대한 의무 교육은 6 년이 초등학교 교육과 3 년의 중학교 교육으로 규정되고 있다.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로 하여금 의무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할 것과 이를 위한 시설 확보에 필요한 조치 및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설치 및 경영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31. 대한민국의 형법 제 9 조에서는 “14 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별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소년법 제 2 조에서는 20 세 미만의 자를 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하여 그 환경이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 처분을 행하고, 또한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 조치를 행하고자 하는 소년법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민법과 기타 선거권 연령을 규정한 법령들을 고려하여 규정한 것이다.

32. 20 세 이상의 사람은 자유롭게 결혼할 수 있다. 남자 만 18 세, 여자 만 16 세에 달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라도 혼인한 경우에는 친권 또는 후견을 벗어나서 독립적인 법적 행위 능력을 갖게 된다.

33. 대한민국의 병역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인 자는 19 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정받기 위하여 징병 검사를 받고 현역병으로 입영할 수 있다. 그러나 17 세 이상의 자로서 군에 복무할 것을 지원한 자에 대해서는 병무청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이 육군 또는 공군의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34.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는 나이는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아동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법정이 모든 절차를 견딜 만큼 강하다면 그 아동은 증언할 수 있다. 단, 아동의 증언을 채택하는지의 여부는 법정의 권한이다. 그러나 16 세 미만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 159 조 1 호에서 선서 무능력자로 규정하고 있다.

35. 미성년자보호법은 미성년자의 흡연, 음주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아울러 미성년자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성년자의 건강을 보호하며 그들을 선도·육성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20 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흡연을 하는 행위, 음주를 하는 행위,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 흥행장, 유흥접객업소, 사행행위장 등에 출입하는 행위, 기타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할 수가 없다.

36. 대한민국에서 운전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나이는 18 세이며, 16 세 이상의 사람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다.

#### 4. 제 3 장 일반 원칙

##### 제 1 절 무차별 원칙(협약 제 2 조)

37. 협약의 제 2 조에서는 무차별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헌법 제 11 조 1 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고 규정함으로써 모든 아동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헌법 제 11 조 2 항은 “사회적 특수 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동조 3 항은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 13 조 3 항은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여 신분 제도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친족의 행위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여 아동을 보호하고 있다.

38. 혼인 외의 출생자는 일부일처제 및 법률혼을 존중하는 사회적관습 때문에 냉대를 받아 왔으나. 대한민국정부는 모든 개인을 인간으로서 존중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신분적, 재산적으로 혼인 중의 출생자와 법률상 아무런 차별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제 985 조 1 항은 호주승계인을 결정하는 순위에 있어 혼인 중의 출생자를 우선으로 하고 있다. 또한 호적법 제 49 조 2 항 2 호에서 출생신고서에 혼인 중의 출생자인지 아니면 혼인 외의 출생자인지를 구별하여 기재해야 함으로써 가족 내의 적서 차별이 완전히 불식되어 있지는 않다.

39. 대한민국은 단일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인종 차별이나 민족간의 분쟁 등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남아 선호의 가치관이 아직도 남아 있으나, 정치·문화·교육의 분야에 있어서 성에 의한 기회의 차별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

#### 제 2 절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협약 제 3 조)

40. 부모는 아동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존재이므로, 대한민국의 아동 복지 정책은 부모에게 아동 양육의 일차적인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국가와 지역 사회는 부모가 자녀를 올바르게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아동은 부모의 부적절한 양육이나 처우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41. 아동복지법 제 3 조 2 항에서는 국각와 지방 자치 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아동을 건전하게 육성할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은 아동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된다.

#### 제 3 절 아동의 생명, 생존 및 발달권(협약 제 6 조)

42. 협약의 제 6 조에서 요구하고 있는 아동의 생명에 관한 고유한 권리와 생존 및 발전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헌법 제 10 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지다” 고 규정함으로써, 아동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기본 인권을 보장하고 있다. 특히 아동의 복지에 관해서는 “아동이 건전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건강하게 육성되도록” 아동 복지 정책이 수립, 실천되고 있다.

43. 소년법 제 59 조는 “18 세 미만인 소년이 죄를 범하여 사형 또는 무기 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5 년의 유기 징역으로 한다” 고 규정하여 아동의 생명권을 절대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 제 4 절 아동의 대한 의사 존중의 원칙(협약 제 12 조)

44.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나, 친권자나 그 대행자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이 있을 때, 또는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자녀이 재산을 위태롭게 한 때에는 친권이 상실되고, 그 대리권 및 관리권에 대하여도 상실 또는 상실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45. 친권 상실의 신고는 민법 제 777 조 규정에 의한 친족 또는 검사,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하며,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46. 친권자의 대리 행위가 자녀이 행위를 필요로 하는 책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자녀 자신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미성년자인 자녀가 의사 능력이 이르면 친권자의 동의를 얻어 스스로가 재산 행위를 할 수 있으며, 다만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이싸.

47. 부모의 이혼으로 자녀의 양육자나 친권행사자를 지정하여야 할 경우 자녀가 15 세 이상일 때에는 자녀의 의견이 고려되어진다. 입양되는 아동이 15 세 이상인 경우에는 아동의 동의 없이 입양되지 못한다.

## 5.제 4 장 시민적 권리와 자유

### 제 1 절 이름과 국적(협약 제 7 조)

48. 아동의 입적 및 성과 관련하여 민법 제 781 조 1 항은 “자(子)는 부(父)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가(父家)에 입적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 모가에 입적하며,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성과 본을 창설하고 일가를 창립할 수 있다.

49. 호적법 제 49 조는 모든 출생에 대하여 한 달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생 신고의 의무는 혼인 중의 출생자인 경우엔 부 또는 모가 , 혼인 외의 출생자인 경우에는 모에게 주어진다. 기아(棄兒)의 경우에 시, 읍, 면의 장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기아의 성과 본을 창설한 후 이름과 본적을 정하여 이를 호적에 기재하여야 한다.

50. 출생 신고는 출생자의 행정 관서에 출생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지는데, 이때 제출하는 신고서에는 ①아동의 성명, 본 및 성별 ②아동의 혼인중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구분 ③출생의 연, 월, 일, 시 및 장소 ④부모의 성명 및 본

⑤아동이 입적될 가의 호주의 성명 및 본적 ⑥아동이 일가를 자립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원인과 장소 등을 기재하게 된다. 출생신고서에는 의사, 조산사, 기타 분만에 관여한 자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1. 혼인 외의 출생자, 기아 및 무국적자의 자녀를 포함한 모든 아동은 국적법 제 2 조에 따라 출생에 의하여 국적을 취득하도록 보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출생할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거나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때에는 사망한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경우, 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국적이 없는 때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부모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국적이 없는 때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된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하여 무국적을 방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인 여자와 출생지주의 국적법에 따르는 국가의 남자 사이에 태어난 아동은 무국적이 될 가능성이 있다.

#### 제 2 절 신분의 유지(협약 제 8 조)

52. 대한민국이 모든 국민은 호적에 등재된다. 호적에 기재되는 내용은 ①본적, ②호주의 성명 및 호주와의 관계, ③호적의 편제 기타 호적 변동 사유의 내용과 생년월일, ④호주 및 가족의 성명, 본 성별, ⑤출생년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⑥ 호주 및 가족이 된 원인과 연, 월, 일, 호주 및 가족의 친생부모와 양친의 성명, ⑦호주와 가족과의 관계, ⑧타가에서 입적하거나 타가로 떠난 자에 대하여는 타가의 본적과 호주의 성명, ⑨호주또는 가족의 신분에 관한 사항, ⑩기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등이다. 그리고 호적에 기재된 내용은 감독 법원의 허가를 얻는 경우에만 변경이 가능하다.

53. 대한민국 국민은 국적을 상실하지 않는다. 다만, ①외국인과 혼인하여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한 자, 외국인의 양자로서 그 국적을 취득한 자, 혼인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가 혼인의 소멸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자가 혼인의 소멸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 ②외국인의 양자로서 그 국적을 취득한 자, ③혼인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 ④자진하여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 ⑤이중국적자로서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국적을 이탈한자, ⑥미성년인 대한민국의 국민이 외국인의 인지로 인하여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 단 대한민국 국민의 처 또는 양자가 된자는

예외로 한다. ⑦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가 6 개월이 경과하여도 그 외국의 국적을 상실하지 아니한 때 등의 경우에는 국적이 상실된다.

54.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국적을 회복할 수 있으며, 부모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때에는 본국법에 의하여 미성년자로 정의되는 자는 부모와 함께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다.

55. 혼인 외의 출생자는 그 생부나 생모가 이를 인지할 수 있으며, 그 부모가 혼인할 때에는 그 때로부터 혼인중의 출생자로 본다. 자와 그 직계존속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1 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제 3 절 표현의 자유(협약 제 13 조)

56. 표현의 자유 및 정보 취득의 자유는 헌법 제 21 조 1 항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를 가진다” 및 동법 제 22 조 1 항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및 동법 제 22 조 1 항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된다. 동법 제 21 조 2 항은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여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 및 검열제 금지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언론의 비판과 감시 기능의 활성화를 통해 인권 침해 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57.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정신적 자유의 증핵을 이룰 뿐 아니라 민주 사회의 초석이 된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는 사람의 내적인 사상의 자유와는 달리 절대적 무제한의 자유는 아니며, 사회적 성격을 검유함으로써 그 내재적 한계가 있다. 따라서 헌법 제 21 조 4 항은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 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아니된다. 언론, 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침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여 이 권리의 행사에 따른 특별한 의무와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58. 언론과 출판이 그 내재적 한계를 벗어남으로써 남용되는 경우에 이를 규율하는 법규정으로, 형법 제 309 조는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 751 조는 타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불법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내란죄·외환죄의 선종, 공공 질서의 교란 또는 국가 질서 파괴의 선동, 선전행위, 음란 문서 배포 등도 각 해당 법조문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59. 헌법은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에 관해서도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일정한도 내에서 필요하다고 합리적인 제한은 허용된다고 보고 있다. 헌법제 76 조에 의하여 대통령이 긴급명령을 발한 경우에는 언론, 출판의 자유도 상술한 일반적인 원칙이 아닌 긴급명령에 의하여 제한을 받게 되고, 동법 제 77 조 3 항에 의하여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법률이 정하는 방에 따라 계엄사령관은 포고령에 의하여 언론, 출판의 자유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 4 절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협약 제 14 조)

60. 헌법 제 19 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동법 제 20 조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동법 제 19 조에서 규정하는 양심의 개념속에 사상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61. 양심의 자유는 양심의 결정에 관하여 강제, 압력, 간섭을 받지 아니할 자유와 양심상 결정한 내용에 관해 침묵할 자유를 포함한다. 따라서 형사 절차에 있어서 본인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인 경우에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62. 종교의 자유는 신앙 문제에 관하여 외부로부터 강제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종교적 확신을 자유로이 외부에 표명할 수 있는 신앙의 자유와, 기도·예배·독경 등과 같이 신앙을 외부에 표현하는 모든 의식, 축전을 할 수 있는 종교적 행사의 자유, 종교적인 목적으로 회합을 하거나 단체를 조직할 수 있는 종교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자신이 신봉하는 종교를 선전하고 새로운 신자를 규합할 수 있는 선교의 자유, 종교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선교 교육의 자유 등을 포함한다. 헌법 제 21 조에 규정된 언론, 출판의 자유는 종교활동에 대하여도 보장되므로 각 종교 집단은 다른 집단과 차별받지 않고 그들의 제작물을 인쇄하고 배포할 수 있다.

63. 민법 제 913 조는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 의무가 있다” 고 규정하여 부모나 법정 후견인은 자신의 신앙에 관련하여 자녀들에게 종교적, 도덕적 교육을 시킬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부모의 신앙을 자식에게 강요할 수 없으며, 특정의 종교 단테에서 설립한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다른 종교를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현행 대도시 중.고등학교 무시험 진학 제도는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경우가 있다. 학교의 종교 교육에 대한 방침에 의하여 학생이 원하지 않는 특정 종교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생겨나기도 한다.

#### 제 5 절 결사 및 집회의 자유(협약 제 15 조)

64. 헌법 제 21 조 1 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2 항은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3 조 1 항은 누구든지 폭행, 협박 기타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음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고 규정하여 평화적 집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65. 헌법 제 37 조 2 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고 규정하여 그 한계를 규정하고 있다.

#### 제 6 절 사생활의 보호(협약 제 16 조)

66. 헌법 제 16 조는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여 주거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동법 제 17 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동법제 18 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여 통신의 비밀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 제 21 조 4 항에서는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과 사회 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 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언론, 출판에 의한 권리의 침해를 금지하고 있다.

67. 헌법 제 36 조 1 항은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兩性)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 33 장에 명예에 관한 죄를 규정하고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함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 35 장에 비밀 침해의 죄, 동법제 36 장에 주거 침입의 죄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 제 7 절 정보접근권(협약 제 17 조)

68. 대한민국의 방송 구조는 민·공영 혼합 체제로 되어 있다. 1987 년 처음 제정된 방송법은 방송의 자유와 공적 기능을 보장하고 있으며, 민주적 여론 형성과 국민 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공공 복지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994 년 현재 5 개 텔레비전 및 13 개 라디오 방송국이 있으며, 교육 프로그램만을 제작, 방영하는 교육 텔레비전 방송국이 있다.

69. 1991 년도의 전체 발생도서는 약 18,006 만 권으로, 그 중 아도 도서가 14.5%, 학습 참고서가 53.8%를 차지하고 있다.

70. 아동과 청소년의 꿈과 이상을 표현하고 이들이 건강한 문화환경 속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건전한 청소년 영화의 제작·보급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좋은 영화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청소년을 위한 좋은 영화를 선정하여 제작비를 지원하고 있다.

72. 아동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선정적이고 퇴폐적인 내용, 비속어 사용, 폭력 장면의 과다 묘사는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에서 금지되고 있다. 모든 영화는 ‘초등학생 관람가’, ‘중학생 관람가’, ‘고등학생 관람가’, ‘청소년 관람 불가’의 4 등급으로 구분되어 상영된다.

73. 아동복지법 제 18 조는 아동에게 유해한 흥행영화 기타 이에 준하는 흥행물을 관람시키는 행위, 아동의 덕성을 심히 해할 우려가 있는 도서, 간행물, 광고물, 기타의 내용물을 제작하거나, 이를 아동에게 판매, 공여, 교환, 전시, 방송하거나

또는 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여 아동이 건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제 8 조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협약 제 37 조 제 1 항)

74. 헌법 제 12 조 2 항은 “모든 국민을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동법 제 12 조 7 항은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만,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고문 또는 잔혹한 취급이나 형벌을 금지하고 있고, 고문에 의한 자백을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증거법적 측면에서 그러한 행위들이 피해자에게 가하여지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다. 동법 제 125 조는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 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때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75. 대한민국은 형법이나 특별법에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으나 사형 대상 범죄를 내란죄 등과 같은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 인명살상 행위 등 흉악 범죄와 같은 매우 중대한 범죄로만 제한하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중대 범죄라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신속한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 형사피고인의 무죄 추정,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국선변호제도, 상소권보장, 재심 이유, 사형 집행 명령의 시기 등의 규정에 의해 독립된 권한 있는 법원에 의한 공정한 심사에 따른 판결 선고와 피고인의 무죄 추정, 실질적인 변호권 행사 보장, 상소권 및 재심청구권 등을 보장하고 있다.

76. 사형 금지 연령은 종래 16 세 미만으로 규정하던 것을 1988 년에 소년법을 개정하여 18 세 미만으로 상향조정하고, 동법 제 59 조에서 18 세 미만의 소년에 대하여 사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사형 대신 15 년의 유기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였다. 아울러 소년법은 18 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무기 징역을 선고할 경우에도 무기 징역대신 15 년의 유기 징역에 처하도록 하여 종신형의 금지를 명문화하였다.

## 6. 제 5 장 가정 환경 및 대리보호

제 1 절 부모의 지도와 책임(협약 제 5 조, 제 18 조 제 2 항)

77. 아동 복지 정책의 기본 방향은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요보호 아동의 보호와 일반 아동의 건전 육성이다. 아동 양육의 책임 주체는 부모로서 민법 제 909 조 1 항은 “미성년인 자는 부모의 친권에 복종한다”고 규정하여 부모를 친권자로 규정하고 있다.

78. 민법 제 909 조 2 항은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면서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이를 정하도록 하였다. 동법 제 913 조는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여 부모에게 자녀의 보호 및 교양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79. 부모가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원 조치로서 임신중의 여자에 대하여 출산 전후를 통하여 60 일의 유급 휴가를 보장하고 있으며 생후 1 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하루 2 회 각각 30 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또한 생후 1 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근로 여성이 그 유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할 수가 있다. 이 경우 육아 휴직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 60 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산후 유급 휴가 기간을 포함하여 1 년 이내로 하며, 이기간은 근무 기간에 포함된다.

80. 대한민국은 부모가 아동 양육의 책임을 잘 수행하도록 국가가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모자복지법’은 보자 가정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함으로써 모자 가정의 행복할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모자복지법’은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동 복지법’은 아동이 건전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건강하게 육성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유아교육진흥법’은 유아에게 좋은 교육 환경을 마련하여 삼신 발달의 충실을 기함과 아울러 무한하나 잠재력을 신장하게 함으로써 장차 건전한 인격을 가진 국민으로 성장하여 국가 발전에 기여하게 하기 위하여 유아 교육과 보육을 진흥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유아보육법’은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또는 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생활보호법’은 생활 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보호를 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함으로써 사회복지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 제 2 절 부모로부터의 분리(협약 제 9 조)

81. 민법 제 924 조는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아동이 부모로부터 분리되는 경우에 대하여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다.

82. 민법 제 837 조 1 항은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중 일방은 면접교섭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부모의 아동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부모에 대한 아동의 면접교섭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 또한 15세 이상의 아동만이 부모 이혼시 또는 입양시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어 15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의사표시권은 보장되지 않는다.

83. 민법 제 837 조 2 항은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아동이 원하지 않을 경우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84. 형사소송법 제 87 조는 변호인 등에 대한 구속의 통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종래에는 통지 내용 중 구속의 이유가 없었으며 구속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였던 것을 1987년 에 동 법률을 개정하여 구속의 이유까지 통지하여야 할 것과 구속 후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구속된자의 방어권 보장을 한층 강화하였다. 또한 행정법시행령 제 166 조는 “소장은 제소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병명, 병력 및 사망 연월일시를 지체 없이 사망자의 가족 또는 친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제 3 절 가정의 재결합(협약 제 10 조)

85. 헌법 제 14 조는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라고 규정하여 국내에서의 거주, 이전의 자유 및 국외 거주의 자유와 해외여행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86. 외국인이 유효한 여권과 사증을 소지하고 입국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 11 조(입국의 금지 등)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 환자, 총포등 소지자, 풍속위해자, 정신장애인 등과 같은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닌 한 대한민국에의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출국하는 경우에도 동법 제 29 조(외국인 출국의 정지)의 규정에 의한 범죄혐의자, 세금채납자, 기타 출국 허용 부적합자 등과 같은 출국의 정지 대상이 아닌 한 대한민국으로부터 출국이 보장된다. 따라서 협약 제 10 조의 규정에 따라 가족의 재결합을 위한 아동 또는 그 부모의 출입국은 출입국관리법 제 11 조 및 동법 제 29 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

### 제 4 절 아동을 위한 양육비 회수(협약 제 27 조 제 4 항)

87. 아동을 위한 양육비 회수 방안을 제 6 장 제 5 절 생활 수준 참조.

### 제 5 절 가정 환경 상실 아동(협약 제 20 조)

88. 아동은 가정에서 태어나고 키어지며, 가정은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환경이다. 그러나 아동이 이러한 환경을 가질 수 없거나 가정에서의 양육이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저해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 11 조와 제 12 조에 의하여 정부는 아동을 복지 시설에 수용하여 필요한 보호 조치를 하게 된다. 1993 년에 발생한 요보호 아동은 모두 4,451 명에 이르는 데, 이들 중 2,940 명(64%)은 시설에서 보호되고 있다.

89. 아동 보호 시설의 설립은 한국전쟁 이후 수많은 전쟁 고아들을 수용, 보호해야 했던 사회적 요구의 대응에서 비롯되었다. 그 이후 아동 보호 시설의 수는 계속적으로 증가되었는데 1970 년대 이후 요보호 아동의 발생 감소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요보호 아동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조치는 아동을 보호 시설에 수용하는 것인데, 이는 대리 양육 환경이 제대로 개발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탈시설화, 정상화, 통합화, 개별화, 사회화를 촉진하는 다양한 대리 양육 환경의 개발이 큰 과제이다.

<표 2> 1990-1993 년, 요보호 아동 발생 현황

년도	계	발생 유형		보호내용		
		기아	미아	시설보호	위탁보호	입양
1990	5,721	4,213	1,508	3,744	1,134	853
1991	5,095	3,630	1,465	3,414	999	682
1992	5,020	3,294	1,726	3,122	1,212	686
1993	4,451	3,234	1,217	2,940	943	568

90. 시설 보호에 대한 대안으로 가정 위탁 제도가 1985 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의 가정 위탁 종류는 입양 위탁, 고용 위탁, 유료위탁, 무료 위탁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가정 위탁은 탈수용시설화 정책의 하나로서 정책적으로 강조되고 있지만, 아직도 이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여 그 실적이 부진하고, 입양을 위한 전 단계의 조치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가정 위탁이 활발하게 전개되지 못하는 원인으로는 ①혈통 중시 가족제도, ②경제적 불안정, ③주거 공간의 부족, ④ 아동 수당 등 사회 보장의 미비, ⑤위탁 보호에 관한 전문 사회 사업 기관의 부족 등이 논의되어진다.

제 6 절 입양 (협약 제 21 조)

91. 민법과 입양특별법에 근거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입양 제도는 국내 입양과 국외 입양으로 구분되어 있다. 입양대상자는 보호 시설에 있는 18 세 미만의 아동으로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 없이 입양될 수 없으며, 15 세 이상의 아동이 입양될 경우에는 입양 대상 아동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입양특별법 제 4 조 2 항). 입양 신청자는 입양기관 및 입양 상담 기관의 가정 조사를 받으며, 국내 입양인 경우에는 호적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리고 국외 입양인 경우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의 해외 이주 허가를 받고, 본적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국적 제적을 함으로써 입양이 완료된다.

<표 3> 1958-1993 년 입양 추이 (단위: 명, %)

연도	계	국내입양	국외입양	국내입양비율(%)
1958-1960	2,700	168	2,532	6.2

1961-1970	11,481	4,206	7,275	36.6
1971-1980	63,551	15,304	48,247	24.1
1981-1985	50,502	15,424	35,078	30.5
1986-1990	41,322	11,079	30,243	26.8
1991	3,438	1,241	2,197	36.1
1992	3,235	1,190	2,045	36.8
1993	3,444	1,154	2,290	33.5
<b>계</b>	<b>179,673</b>	<b>49,766</b>	<b>129,907</b>	<b>27.7</b>

92. 1993 년 1 년 동안에 모두 3, 444 명의 아동이 입양되었으며, 그 중 1, 154 명은 국내에 2, 290 명은 국외로 입양되었다(표 3).국내 입양과 국외 입양의 비율은 1975 년에는 국외 입양이 국내 입양의 2.8 배. 1987 년에는 3.3 배이던 것이 점차 감소하여 1993 년에는 1.9 배가 되었다. 그리고 1993 년 12 월 말 현재 국외 입양대상국은 9 개국이나 1993 년에 이루어진 전체 국외 입양의 78.9%가 미국으로 입양된 것으로 나타났다.(표 4)

<표 4> 국외 입양 현황과 분포, 1993

나라	입양아 수
미국	1,807
스웨덴	60
덴마크	139
노르웨이	104
네덜란드	4
호주	69
벨지움	1
프랑스	85
룩셈부르크	21
<b>합계</b>	<b>2,290</b>

93. 아동의 국내 입양 사업은 5 개의 입양 기관과 시·도별 25 개의 국내 입양 지정 기관 및 시·군·구의 아동상담소에서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국외 입양을 감소시키고 국내 입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1988 년부터는 입양가정에 대해 소득세에 인적 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1989 년 11 월부터는 양부모의 자격 기준을

완화하여 45 세 이하에서 55 세 이하로 상향 조정하였다. 또한 입양 가정에 대하여 주택 자금을 최고 3,500 만원까지 융자하고 있다.

94. 한국전쟁의 과정에서 발생한 전쟁 고아와 혼혈아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서비스로 시작된 국외 입양은 4 개 민간기관에서 관장하고 있다. 국외 입양도 국내 입양과 비슷한 절차를 거치나, 인종·문화·언어의 이질적인 환경에서 아동이 적응하고 성장해야 하고, 입양아 및 양부모는 특별한 관심과 도움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사후 관리가 행해지고 있다. 입양 후 국적 취득이 되면 외국의 입양 기관은 이를 법무부에 보고하여 기관에 통보하고, 우리나라의 입양기관은 이를 법무부에 보고하여 국적 이탈신고가 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아동이 국적을 취득할 때까지 외국의 입양기관은 입양 가정에 대한 아동의 적응상태를 6 개월에 1 회 이상 관찰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아동의 사진과 함께 우리나라 입양 기관으로 보내도록 하고 있다.

95. 1993 년에 입양된 아동의 86.5%는 미혼모에게서 태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나머지 23.5%는 가정 빈곤, 일시 동거, 부모 사망, 부모 이혼 등을 이유로 입양 알선을 금지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 제 18 조 6 항에서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 기관 외의 자가 금품 취득을 목적으로 아동 양육을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 제 7 절 불법 해외 이송 및 미귀환(협약 제 11 조)

97.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자에 대하여는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특히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유인 또는 매매하거나 국외에 이송한 자는 3 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국외 불법 이송 관련 범죄 행위를 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아동의 국외 불법 이송 퇴치에 노력하고 있다.

#### 제 8 절 아동 학대, 유기 및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 복귀(협약 제 19 조·39 조)

98. 아동의 기본 권리와 욕구가 침해되는 경우에 사회는 이에 개입할 의무가 있는데 이러한 의무는 아동복지법, 미성년자보호법, 그로기준법, 형법에 명시되어 있다. 폭력과 학대 등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형법 제 287 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에서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징역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형법

제 287 조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그 범행 목적에 따라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목적인 경우에는 최고 무기 징역, 살해할 목적인 경우에는 최고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가중 처벌하고 있다.

99. 아동복지법 제 3 조는 모든 국민과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에 아동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육성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면서, 이를 위하여 동법 제 18 조에서는 아동에 대한 학대, 착취 등의 금지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동법 제 34 조의 규정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

100. 아동의 유기는 대한민국 사회가 겪고 있는 사회문제들 중의 하나이다. 기·미아의 발생률은 점차 감소 추세에 있으나, 기아의 발생률은 미아의 발생률은 2-3 배나 되어, 기아의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제기되고 있다(표 2). 특히 가정 문제 등으로 인하여 유기된 아동은 국가가 보호하게 되는데, 주로 보호 시설에 수용하여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01. 대한민국에서는 부모나 교사에 의한 교육적인 체벌이 ‘사랑의 때’로 인식되는 유교적 문화와 전통이 아직도 남아있다. 따라서 훈육과 신체적 학대의 개념이 혼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아동 학대의 문제가 심각하게 인식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102. 학대받는 아동의 치료, 발견 및 예방을 위한 민간 기구로서는, 1985 년에 서울시립아동상담소가 설립한 ‘아동권익보호신고소’와 1989 년에 설립된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의 하부 조직인 ‘아동학대지역신고센터’가 있다. 또한 1990 년에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가 교육 폭력 추방 캠페인의 일환으로 설치한 ‘호루라기 상담 전화’도 학대받는 아동의 치료, 발견 및 예방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다.

103. 대한민국의 아동 학대 및 방임에 관한 사회적 조치는 초보적 단계인 발견의 차원에 머물고 있고, 치료와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전문적인 개입을 위한 법적장치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따라서 아동 학대 신고의 법적 제도화가 문제 해결의 선결 방안으로 주장되어지고 있다.

104. 이에 따라 정부는 아동 복지 장기 발전 계획의 일환으로 학대 아동의 일시 보호 시범 사업을 단계별로 실시할 계획이다. 1994 년대 아동의 일시 보호 시범

사업을 단계별로 실시할 계획이다. 1994 년과 1995 년에 시행될 제 1 단계 사업은 학대 아동 일시 보호 사업지침의 마련과 아동학대예방협회의 연구를 활성화하는 것이며, 제 2 단계의 마련과 아동학대예방협회의 연구를 활성화하는 것이며, 제 2 단계(1996-1997)에서는 6 대 도시 공립아동상담소에 학대아동신고센터의 시범 설치와 학대 아동 및 가정 상담 전문 인력의 양성을 계획하고 있다. 마지막 제 3 단계(1998 년 이후)에서는 시범 사업의 결과를 분석하고 15 개 시·도로 시범 사업을 확대하며, 아동 복지 법령의 학대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제 9 절 양육 및 보호 기관에 대한 심사(협약 제 25 조)

105.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 2 조에 의하면 아동 복지 시설이란 아동상담소, 영아 시설, 육아시설, 아동일시 보호 시설, 아동 직업보호 시설, 조산 시설, 아동 전용시설, 보호 시설, 아동 입양 위탁 시설, 정서 장애아 시설, 자립 지원 시설을 말한다. 1993 년 12 월말 현대 전국 278 개 시설(영·육아원, 일시 보호 시설, 교호 시설, 자립 지원 시설 등을 포함한 모든 아동 복지 시설)에 20,194 명이 수용·보호되고 있으며, 전체 시설당 평균 아동수는 73 명이고, 육아원의 경우는 78 명이다.

106. 요보호 아동의 발생 건수의 지속적인 감소로 아동 복지 시설과 그러한 시설에서 보호되는 아동의 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향후 아동 복지 시설에서 보호되는 아동은 전체 아동의 0.15%인 2 만명 선에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107. 시·도지사 구청장이 아동 보호 시설의 조직 및 운영, 사업전반, 그리고 회계에 대한 감사를 해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시·도지사, 구청장은 매 분기마다 수시 지도를 실시하고, 또한 필요할 경우에는 특별 감사를 통하여 아동 보호 시설의 운영상태를 지도 및 감독한다.

<표 5> 아동 복지 시설 현황, 1993

	시설수	수용인원수	시설당평균아동수
영아원	38	2,260	59
육아원	219	16,914	78
직업보호	8	346	43
교호	7	545	78
자립지원	6	129	18
<b>계</b>	<b>278</b>	<b>20,194</b>	<b>73</b>

<표 6> 연도별 영·유아 보호 시설수 및 육아수

연도	시설수	아동수
1975	350	32,996
1980	287	23,357
1985	271	24,430
1990	261	22,535
1991	259	21,333
1992	257	20,286
1993	256	19,174

## 7. 제 6 장 기초 보건 및 복지

### 제 1 절 생존 및 발달(협약 제 6 조 제 2 항)

108. 대한민국은 1970-1980 년대를 거쳐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룩하였고, 그 결과 아동의 보건 및 영양 면에서도 괄목할 만한 발전이 이루어졌다. 1980 년에는 출생아 1 천 명당 17.3 명이던 영아 사망률이 1990 년에는 12.8 명의 수준으로 저하되었으며, 1992 년에도 12.8 명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모성사망률은 1985 년에 3.4 명(1 만 명당)이었으나, 1988 년에는 3.0 명까지 그 비율이 낮아졌다. 1991 년이 산전 관리 수진율은 95.1%이며, 시설분만율은 98.9%이다.

109. 모자보건법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자 보건 사업은 임신부 등록 관리 사업, 임신부와 영·유아의 건강진단 사업,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등의 장애 발생 예방 사업 등을 포함한다. 1993 년 현재 모자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는 보건서(267 개 소), 보건의료원(15 개소), 모자보건센터, 보건지고(1329 개소) 및 보건진료서(2,039 개소)가 있으며 1 차 보건 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전국에 77 개 소의 모자보건센터가 보건소 안에 설치되어 있으며, 11 개소의 민간 모자보건센터, 12 개 소의 가족계획협회 산하 모자보건센터가 모자 보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110. 아동 보건의 주요 목표는 산전 및 산후 관리를 통해 아동 인구의 사망률, 유병율, 장애율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이를 위해 1987 년부터 임신부에게 ‘모자보건수첩’을 발행하고 있다. 현재 영·유아의 정기 검진은 생후 6 개월과

18 개월 후에 실시하고 있으며, 장애 발생 예방을 위해 정부는 연간 5 만명의 신생아에게 보건소를 무료로 해주고 있다. 또한 5 세 이하의 모든 어린이에게 필요한 BCG, DPT, 폴리오 홍역 등의 기초 예방 접종을 무료로 또는 거의 무료로 가까운 비용으로 실시하고 있다.

<표 7>영·유아 예방접종률(1989) (단위:%)

BCG	DPT			폴리오			홍역	MMR	간염
	1 차	2 차	3 차	1 차	2 차	3 차			
93.7	98.2	96.4	93.0	98.2	96.4	93.0	92.4	96.3	71.0

111.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율이 높아짐에 따라 모유 수유 실천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한국이 모유 수유 실천율은 1981 년 69%(혼합 수유시 85%)가 1994 년에는 57%(혼합 수유시 74%)로 감소하였다. 모유 수유 실천율을 높이기 위하여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만들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모유 수유 실천 운동이 병원과 민간 단체를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112. 대한민국의 어린이들에게 나타나는 대표적 질병은 폐렴, 기관지염과 같은 호흡기 질환이다.

113.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1992 년 신생아의 장애출현율은 0.6%로 나타나고 있다.

114. 어린이의 주된 사망 원인은 연령별로 0 세의 경우 선천성 이상, 그 이후의 연령에서는 불의의 사고로 나타났다. 의학의 발달로 인해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는 줄어들고 있지만 교통 사고와 같은 예기치 않은 사고가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1991 년에 14 세 이하 어린이가 교통 사고로 인해 사망한 수는 1,566 명이었으며, 이는같은 해의 전체 교통 사고 사망자수의 11.7%에 해당한다.

115. 정부는 교통사고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교통사고 줄이기 5 개년 계획’ (1992-1996)을 수립하였는데, 계획의 성공적인 실천에 의해 1996 년 이후에는 교통 사고에 의한 사망자수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 ‘교통사고 줄이기 원년’인 1992 년에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한 수는 11,585 명으로 1991 년에 비해 13.7%가 감소하였고, 특히 14 세 이하 어린이의 교통 사고

사망은 1,114 명으로 그 전해에 비해 거의 30%가 감소 사망률과 비교할 때 여전히 높다.<sup>3</sup>

116. 현재 학교에서는 교통 안전 교육이 여러 교과목에 분산되어 산발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나, 현장 교육은 전무한 상태이고 교사를 위한 지침서와 시청각 자료도 없는 실정이다. 교통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써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교통안전진흥공단은 10 학급 이상이 학교에 생활 지도 교사를 대상으로 어린이 교통 안전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또한 학교를 중심으로 반경 500m 이내를 ‘어린이 보호 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 안전 시설물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각종 교통규제를 실시함으로써 어린이 교통안전을 도모하고 있다.

117. 1967 년에 제정된 ‘학교보건법’은 “학교의 보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게 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능률화를 기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교 보건의 구체적 실천 방법의 하나인 학교 급식을 도서벽지형, 농어촌형, 도시형으로 구분하여 정부에서 급식시설비, 운영비, 식품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사립 학교의 경우 자체 부담으로 운영한다. 1994 년 1 월 현재 초등학교 급식률은 초등학교의 39%, 초등학생의 22%로, 1996 년 말까지 모든 초등학교에 학교 급식을 운영할 계획이다.

## 제 2 절 장애 아동(협약 제 23 조)

118. 1993 년 말 현재 전체 아동의 0.78%인 10 만여 명이 장애 아동인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신체 장애, 정신 지체, 정신적 결함 등으로 일상 생활과 사회 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아동으로서, 장애인 복지법(제 1 조)에 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들에 대한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의 책임이 있다. 대부분의 장애 아동은 집에서 가족들과 생활하나 장애의 상태가 중중이어서 자립이 곤란한 경우 재활에 필요한 상담, 치료 또는 훈련과 요양을 위하여 시설에 수용된다. 전체 장애 아동의 약 6.5%인 6,443 명이 1993 년 말 현재 152 개 소의 장애 재활 시설에 수용되고 있다.

---

<sup>3</sup> 교통 사고로 인한 어린이의 사망은 스웨덴의 경우 40여 명, 독일 160여 명, 그리고 영국 400명의 수준이다.

119. 장애인 복지의 기본 목표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의 보장으로 장애 아동과 관련된 법으로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특수교육진흥법 등이 있다. 1988 년에 개최된 서울 장애인 올림픽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장애인의 재활과 사회 참여 확대 등 복지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 직속 자문 기구인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 를 설치하여 종합적인 복지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장애인 복지 종합 대책의 주요 내용은 장애 발생 예방, 의료 보장, 재활 용구의 보급, 교육 기회의 확대, 생활 환경 개선, 장애인 복지 전달 체계의 개선, 전문가 양성 및 국민 이해 증진 등이다.

120. 장애인 취업 조장의 실현을 위해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고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는 소속 공무원 정원의 2%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의무화하고 300 인 이상의 기업체에서도 상용 근로자 총수의 1-5% 범위 내에서 (기준 고용률은 2%)장애인을 고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1988 년부터 장애인 등록제를 실시하여 장애인 수첩을 교부하고 등록 장애인에 대하여는 취업 훈련의 기회부여, 공무원 채용시 장애인인 별도 선발, 취업 알선, 자동차 구입시 면세 조치, 보장구 지급 등 지원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표 8>전국 재가장애 아동의 연령별·성별·장애종류별 장애출현율 (단위:천명당)

연령	계	성별		장애종류별				
		남자	여자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
0-4	2.61	3.46	1.61	0.70	0.43	0.46	1.04	1.23
5-9	5.69	6.96	4.30	2.02	1.36	0.71	1.83	2.32
10-14	7.46	8.82	6.01	2.36	1.49	0.99	2.80	2.89
15-19	8.28	10.38	6.10	3.42	1.39	1.24	3.00	2.92

121. 장애인 대상 의료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활 병원은 총 8 개소로 그 중 1 개소는 아동 전용 재활 의원이다. 이들 재활 병원의 운영비는 국고 40%, 지방비 40%, 자부담 20%로 구성되며, 200 병상 규모의 ‘국립전문재활의료센터’ 가 1994 년에 건립되어 운영중이다. 1994 년 현재 장애인들이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치료와 교육 및 취업 훈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도 단위에 건립된 21 개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지체, 견학, 청각, 언어 및 정신 지체 등 일정유형 장애인의 복지 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13 단종(短種)복지관이 있다.

122. 심자의 발육 부진, 기형 및 기능 장애 등을 지니고 태어나는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중 가정이 가난하여 수술비의 자부담이 어려운 어린이에게는 1984 년부터 전문적 민간 단체인 한국심장재단이 수술을 알선하고, 그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다. 1994 년까지 9,242 명의 어린이가 한국심장재단의 도움으로 심장병 수술을 받았으며, 이 사업에 43 개의 의료 기관이 참여하였다. 또한 1994 년부터 가정형편이 어려워 수술을 못 받고 있는 기타 질환 어린이들에 대해서도 한국심장재단이 수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 제 3 절 보건 서비스(협약 제 24 조)

123. 1977 년에 의료 보험제도가 도입되고 1988 년 1 월엔 농어촌 지역 의료보험이 1989 년 7 월에는 도시 지역의료보험이 실시됨으로써 전 국민의 의료 서비스 접근이 향상되었다. 1991 년 현재 전국민의 90%이상이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지역 의료보험비의 50%를 정부에서 부담하고 있다.

124. 전 국민 의료 보험 실시와 함께 의료 기관의 기능 분담을 위하여 의원(1 차 의료 상담)은 외래 진료, 중소 병원(2 차 의료 기관)은 외래 및 입원 진료 기능, 그리고 종합 병원(3 차진료기관)은 의뢰된 외래환자의 이부연 중심의 진료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이런 체제 하에서 소아 진료가 행해진다.

125. 1992 년 현재 아동 전용 병원은 2 개소가 있고, 소아과 전문의는 2, 188 명으로 전과목 전문의 24, 994 의 8.8%이며, 매년 약 200 명의 소아과 전문의가 배출되고 있다. 의료 기관의 약 85%가 민간 기관으로 1 차 진료 기관인 소아과 의원은 1,155 개 소, 2 차진료기관인 병원급은 428 개 소, 3 차 진료 기관인 종합병원은 34 개소이다.

126. 1992 년도에 행해진 ‘국민 건강 및 보건 의식 행태 조사’ 에 따르면, 아동의 인구 100 명당 이환(罹患)율은 0-4 가 50%, 5-9 세가 27%, 10-19 세는 16%, 이들의 의료기관방문율은 1-4 세가 49%, 5-9 세가 25%, 10-19 세가 13%로 나타나고 있어, 0-4 세의 아동이 이 환율도 높고 의료 서비스의 이용도 높음을 알수 있다.

제 4 절 사회보장 및 아동 보호 시설(협약 재 26 조 및 제 18 조 제 3 항)

127. 국가는 사회 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헌법 제 34 조 2 하에 밝히고 있다. 현행 사회보장제도 중에서 아동을 위해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없고, 생활보호법상의 생활보호대상자 안에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보호자와 사는 18 세 미만의 아동이 우선적으로 포함된다. 이들은 생계보호(쌀,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등 일상 생활의 수요를 충족하는데 필요한 금품의 지급), 교육 보호(중학교와 실업고등학교의 학비 전액 지원) 및 의료 보호를 받는다. 1993 년 말 현재 생활 보호 대상 아동은 전체 생활보호대상자 2001 천명 중 25.9%인 518 천명으로 전체 아동의 3.7%에 해당한다. 또한 모자 가정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는 생계비, 아동 교육 지원비, 취업훈련비 및 훈련기간 중 생계비, 아동양육비를 지급하고 사업 자금과 주택 자금으로 대여한다.

128. 산업화와 경제 성장으로 1960 년대 이후 한국의 가족을 점차 소가족화의 추세를 보이고 있고 여성 취업 인력, 특히 취업모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은 1992 년 현재 47.3%이고 전체 기혼 여성의 46.7%인 5,718 천명이 취업하고 있다(통계청,1993).대한민국의 보육서비스는 1991 년에 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데, 이 법을 통해 ‘탁아’의 용어가 ‘보육’으로 대체되고 보육사업은 보사부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게 되었으며, 저소득 가족에 대한 보육료의 지원을 규정하는 등 과거어느때의 법적 대책에 비해 진일보한 법적 및 행정적 조치가 이루어졌다. 보육시설의 수는 1993 년 말 현재 5, 490 개소로써 추정 보육대상 아동 109 만 명의 15.3%인 153 천명이 보육되고 있다.

<표 9>시설별 보육 현황 (단위 : 센터, 명)

	1990	1991	1992	1993
국공립보육시설	360	503	720	837
민간보육시설	39	1,217	1,808	2,419
직장보육시설	20	19	28	29
가정보육시설	1,500	1,931	1,957	2,105
계(개소)	1,919	3,670	4,513	5,490
아동수(명)	48,000	89,441	123,2970	153,27

129. 정부에서는 늘어나는 보육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어린이의 건전한 보육과 맞벌이 가정의 자립 생활 지원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0 년부터 사회복지 분야의 주요 정책 사업으로 보육시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1990 년 말에는 1,919 개소에 불과하던 보육시설이 1993 년 말 현재 5,490 개 소로 늘어나 연평균 95%증가하였고 같은 기간동안 보육아동수는 48 천 명에서 153 천명으로 늘어나 연평균 106%의 증가를 기록하였다. 보육사업을 위해 정부가 트자한 예산은 1990 년에 191 억원에 불과하였으나 1993 년에는 985 억원으로 그리고 1994 년에는 1,188 억원으로 늘어나 연평균 75.4%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130.부모들은 일반 아동이 장애 아동들과 혼합되어 보육되는 것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정부는 1996 년까지 장애아 전담 보육 시설 6 개소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131. 현재 정부는 정확한 보육 수요 추계를 위한 조사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하고 있으며, 1997 년까지 저소득층의 보육대상 아동 전체를 보육하기 위해 저소득층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보육시설을 신축하는 한편, 아동의 연령별 발달 단계에 알맞은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보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힘쓰고 있다.

#### 제 5 절 생활 수준(협약 제 27 조 제 1 항, 2 항, 3 항)

132. 대한민국의 가족 성원의 복지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가족이 지며, 사회와 국가가 이차적인 책임을 진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요보호 대상자 중심의 선별주의 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가족을 복지 기능 강화와 요보호자의 발생 예방이 강조된다.

133. 요보호 아동의 생활 수준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써 정부는 공적 부조 사업 외에 결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결연 사업은 공적부조의 실질적 급여 수준이 최저 생계유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시설 보호 아동 소년소녀 가장 세대 모자 가정의 아동들에게 후원자가 매월 1 구좌당 일정액의 단위로 후원금을 보내고 방문과 초청을 통하여 이웃의 따듯한 정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결연 사업은 1981 년부터 민간이 자율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전문사회사업기관인 한국어린이재단이 중심이 되어 추진되고 있다.

134. 소년 소녀 가장 세대에 대한 후원자 결연 사업은 정부가 1985 년에 처음 시작한 것으로 요보호 아동의 시설 입소를 예방하고 글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지역 사회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탈시설화와 종합화 운동의 맥락에서 발전된 대한민국 특유의 제도이다. 소년 소녀 가장 세대는 부모의 사망, 질병, 심신장애, 가출, 이혼 및 수형 등으로 인하여 만 20 세 이하의 소년 소녀가 가계를 책임지는 세대로 정부는 이들에게 경제적으로 필요한 최저의 생활을 보장해 줌으로써 지역 사회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며 비행 청소년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자립능력을 배양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되도록 보호하고 있다. 이들 소년 소녀 가장 세대는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1993 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283 세대(212 명의 세대원)가 증가하여 총 7,322 세대(14,293 명이 세대원)가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고 있다. 1992 년 말 현재 소년 소녀 가장 세대의 결연율은 세대 단위로 98.6%(세대원의 856%)이고, 실질적 후원금은 결연 아동이 1 인당 월평균 25,000 원정도이다.

<표 10> 소년 소녀 가장 세대의 현황 (단위: 세대, 명)

연도	세대수	세대원					
		계	미취학	국민학생	중학생	고등학교	기타
1985	6,696	13,778	142	3,593	4,009	2,998	3,036
1989	6,029	13,233	450	3,749	3,814	1,632	3,588
1990	4,901	11,125	410	3,356	3,133	1,135	3,091
1991	6,902	13,985	121	3,650	4,093	3,194	2,927
1992	7,089	14,081	136	3,521	4,404	3,374	2,646
1993	7,322	14,293	119	3,331	4,710	3,622	2,511

## 8. 제 7 정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 제 1 절 교육(협약 제 28 조)

135.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부여하고 의무 교육은 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36. 헌법의 규정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교육법에서는 모든 국민이 6 년의 초등교육과 3 년의 중등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밝히고,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로 하여금 의무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할 것과 이를 위한 시설 확보에 필요한 조치 및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의 설치, 경영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137. 대한민국의 현행 학교 제도는 초등학교 6 년, 중학교 3 년, 고등학교 3 년, 대학 4 년의 6-3-3-4 제를 근간으로 하는 단선형 학제를 채택하고 있다. 1993 년 현재 학생수는 전 국민의 4 분의 1 에 이르는 1,146 만여 명(이 중 여학생은 전체 학생의 45.8%인 5,253,138 명), 교원수는 41 만여 명, 학교 수는 19,790 여 개에 이르고 있다. 교육에 대한 지원 체제로는 중앙 정부의 교육부와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청(15 개), 그리고 시·군의 하급 교육청(179 개)이 있다. 교육 여건의 지표로 사용되는 학급당 학생 수는 1993 년 4 월 현재 초등학교 38.7 명, 중학교 48.5 명, 고등학교 47.7 명으로 나타나며, 제 7 차 경제사회발전 5 개년 계획이 끝나는 1996 년에는 초등학교 37.8 명, 중학교 47.5 명, 그리고 고등학교 47 명 수준으로 될 전망이다.

<표 11>학교 및 학생의 현황(1993)

구분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
유치원·유아원	9,484	18,841	288,020	15
초등학교	6,057	111,870	4,336,833	38
중학교	2,590	49,639	2,104,116	48
고등학교	1,757	43,381	2,069,218	47

138.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아동도 대한민국의 아동과 같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 1990 년 11 월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0-19 세의 외국 아동 6,260 명이 58 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 가. 학교의 종류

139. 1950 년에 시작된 초등 교육 과정의 무상 의무 교육은 1993 년 말 현재 거의 완전하게 실시되고 있다. 다만, 학령 아동이 불구, 폐질, 병약, 발육 불완전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도록 하여 획일적인 의무 부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고 있다.

초등학교의 교육내용은 ‘국민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 보통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40. 재외 국민이나 외국인의 자녀로서 우리 나라의 학교에 최초로 입학 또는 전학하는 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거주신고증을 거주지를 관할하는 해당 학교의 장에게 제출할 경우 입학 또는 전학에 관한 절차가 이행된 것으로 봄으로써 대한민국의 아동과 같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41.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은 중학교 과정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는 또한 의무이기도 하다. 다만, 중학교 교육을 무상교육으로 실시함에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가의 재정 형편에 따라 1985 년이후에는 도서 벽지 지역에, 1992 년 이후에는 군 지역에 한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1993 년 4 월 현재 초등학교 졸업생의 중학교 진학률을 99.9%에 이르고 있으며, 중학교과정에 대한 무상 교육 실시율은 17.3%이고 이 비율은 1994 년에 25%에 이를 전망이다. 중학교의 교육 내용은 ‘초등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 보통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특히 사회 과목에서는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직면하고 있는 문제인 질병, 빈곤, 가뭄과 기아, 인구 과잉, 환경의 파괴, 오염 등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고 있다.

142.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실업계 고등학교 또는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며, 고등학교 진학률은 1993 년 4 월 현재 99.1%이고, 실업계 학생수와 일반계 학생수의 비율은 1993 년 4 월 현재 약 35:65 이다. 고등학교는 ‘중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고등 보통 교육과 전문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전 교과에 걸쳐 국제적 교류와 상호 의존 관계의 심화에 따른 국제 이해와 국제 협력의 필요성을 반영하여 국가간 이해의 폭을 넓히는 내용과 세계의 여러 민족 간의 상호 의존성을 강조하고 있다.

143. 대한민국의 고등 교육에 대한 교육 기회는 비교적 폭 넓게 열려져 있다. 1993 년 현대 고등 교육의 적령인 18-21 세 인구의 56.5%인 1,995,047 명이 297 개 고등 교육 기관에 재학하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는 세계적인 기술보호주의 확산에 대비하고 제조업 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 인력 양성 공급을 위하여 매년 대학정원을 6,000 명, 그리고

전문대학의 정원을 15,000 명씩 증원할 계획이기 때문에 고등 교육 기회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

144. 고등 교육에 대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학자금 융자해 주고 있는데, 학비 조달이 어려운 대학생에게 장기 저리로 학자금을 융자해 주는 물론 정부가 이자의 2분의 1 을 부담하고 있으며, 원리금의 상환도 졸업후 5 년 간 상환하게 하고 있다.

145. 만 3 세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의 유아를 교육하고, 적당한 환경을 주어 심신의 발육을 조장하고, 건전한 국민으로 성장하게 하기 위하여 유치원 또는 유아원을 두고 있다. 1993 년 4 월 현재 취원율을 47.3%에 그치고 있으나, 단계적으로 유아 교육 기관을 확충하여 1998 년에는 60%수준이 되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146. 장애 학생을 위한 학교는 교육법 제 143 조 내지 145 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 학교가 있으며, 특수교육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을 통하여 장애 학생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특수 교육의 실제운영 형태는 지역의 형편, 장애인의 분포, 장애 정도에 따라 특수학교, 복지 시설 내 특수 학교의 분교장, 장애별 특수 학급, 복지 시설 내 특수 교사 파견, 재택 순회 교육 등으로 다양하다. 특수 교육은 모든 교육 대상자에 대하여 무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입학금, 수업료 및 교과서대가 전액 면제되며, 통학버스비와 기숙사 비용은 일부 또는 전액 지원하고 있다. 사립의 특수 학교에 대하여도 국·공립 학교와 동일한 수준의 경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특수 교육 예산은 1992 년에 750 억원 그리고 1993 년에는 832 억 원(총 교육 예산의 0.85%)에 이르고 있다.

147. 교육부는 1993 년 현재 46,000 명의 중도 장애 아동과, 198,000 명의 경도 장애 아동(총 24 만 명)을 특수 교육 대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도 장애아를 위한 특수 학교는 1993 년 4 월 현재 시각 장애 12 개교, 청각 장애 20 개교, 정신 지체 57 개교, 지체부자유 11 개 교, 정서 장애 3 개 교의 총 106 개 학교가 있으며, 20,985 명을 수용하고 있다. 경도 장애아를 위한 특수 학급은 3,321 개 학급에 28,210 명 수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특수 교육 대상자의 약 20.2%(중도 장애아의 45.7%,경도 장애아의 14.3%)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나머지 79.8%는 특수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표 12>특수 교육 현황(1993)

구분	장애별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특수학교	시각장애	12	154	1,359
	청각/언어장애	20	396	4,007
	정신지체	57	1,117	12,598
	지체부자유	14	242	2,568
	정서장애	3	45	453
	계	106	1,954	20,958
특수학급	일반학교	2,638	3,321	28,210

148. 정부는 1993 년부터 2001 년까지 33 개의 특수 학교를 신설하고 특수 학급 3,350 학급을 운영하여 장애 아동 전원에 대한 특수 교육의 수혜범위를 증대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특수 교육의 질적 고도화를 위한 장학력 확보를 위해 시·도 교육청에 특수 교육을 전담하는 장학생을 이미 배치하고 있으며, 앞으로 교육부 및 교육청 직제를 지속적으로 보강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에서는 장애별 교육 방법 및 내용의 연구, 학습 자료 개발·보급 및 특수 교원 연수 등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특수 교육 기관에서 수행되는 교수 학습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립 특수교육원을 신설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149. 전체 학교에서 사립학교가 차지하는 비율은 31.9%이고, 총 학생수의 32.8%를 차지하고 있다. 대학의 경우 사립학교와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73.9% 및 74.4%로, 고등교육에서 사학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국가에서 재정 결함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

<표 13>사립학교 현황(1993)

구분	총학교수	사립학교수	총학생수	사립학생수
유치원	8,515	4,001(47.0)	469,380	356,048(75.9)
국민학교	6,057	76( 1.3)	4,336,252	67,392( 1.6)
중학교	2,590	700(27.0)	2,410,874	616,287(25.6)
고등학교	1,757	893(50.8)	2,069,210	1,281,383(61.9)
전문대학	128	120(93.7)	456,227	434,765(95.3)
대학	138	102(73.9)	1,109,622	825,532(74.4)
기타	605	424(70.0)	611,675	176,085(28.8)
계	19,790	6,316(31.9)	11,463,240	3,757,492(32.8)

150. 고등학교에서의 직업, 기술 교육은 실업계 학교와 일반계 학교에서 이루어진다.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육 목적은 실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기술인을 양성함으로써 직업 선택의 기회를 확대함과 아울러 신념을 가지고 직업에 종사하는 태도를 갖추게 하는 데 있다. 일반계 고등학교의 직업 교육은 졸업 후 취업 희망자나 대학진학 포기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되 직업학교, 공고 부설 직업 과정 및 직업 훈련 위탁 교육 등을 통해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직업 교육 내용과 방법에 준하여 이루어진다.

151. 직업 훈련 제도는 정규 교육 과정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급변하는 산업 사회의 인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실시되고 있는 제도로서, 1967 년에 직업훈련법의 제정으로 정식 도입된 이래 1976 년에 현행의 직업훈련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본격적인 산업인력 양성 체제에 돌입하게 되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상급 학교에 진학하거나 취업하지 못하고 직업 능력이 업이 사회에 배출되는 청소년이 매년 20 여만 명에 이르고 있으므로, 정부는 직업 훈련을 희망하는 14 세 이상인 사람은 누구나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직업 훈련에 필요한 비용은 직업 훈련을 실시하는 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직업 훈련을 마친 뒤에도 이들이 건전한 직업인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역의 직업 안정기관을 통하여 적극 취업을 알선하고 있다.

152. 정규 학교에 진학할 형편이 못되는 근로 청소년 등을 위한 학교 제도로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산업체 부설학교 및 산업체 부설 특별 학급을 두고 있다.

153. 그 외에도 검정고시 합격자, 사회교육시설에의 교육과정 이수자 및 기타 소년원법 등 개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교육 과정 이수자들에게도 정규 학교 졸업자와 똑같은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교육 기회 확대에 힘쓰고 있다.

154. 소년원법에서는 비행으로 인하여 교육 기회를 잃은 학생들에게 학력 취득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퇴원후 학업 좌절로 인한 재비행의 악순환을 예방할 목적으로 교과교육소년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를 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학교와 똑같이 취급하고 있다.

#### 나. 교육예산

155. 대한민국은 교육 투자가 개인 발전 및 국가 발전의 전제가 되는 것으로 이해하여 교육예산의 안정적 확보에 큰 비중과 관심을 두고 있는 헌법 제 31 조가 보장하는 국민의 교육권을 실현하는 실질적인 관건이 되는 것으로서, 교육 예산은 지방 교육 재정의 지원, 사학 재정의 지원, 실업계 교육 강화, 교원의 재교육 및 교육의 기회확대를 위한 지원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된다. 교육예산의 규모는 매년 꾸준히 증가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증가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표 14>교육 예산의 규모 (단위:10 억원,%)

	GNP(A)	정부예산(B)	교육부예산(C)	지방교육예산(D)	의무교육비(E)	구성비(%)		
						C/A	C/B	E/C
1985	78,088	12,532	2,492	2,124	1,557	3.2	19.9	62.5
1990	171,468	27,464	5,595	4,837	2,642	3.3	20.4	47.2
1993	256,685	41,936	9,880	8,684	4,301	3.7	23.6	43.5

156. 학생들의 출석을 높이고 결석으로 인한 탈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법 시행령 제 97 조와 제 98 조에 다음과 같은 결석의 경우나 의무 교육을 방해하는 보호자 또는 사용자에게 대하여 경고 또는 통고하여 출석을 독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 97 조에서 학교장은 재학중인 아동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7 일이상 결석을 하거나, 아동의 사용자에게 의하여 의무 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 당하는 때에는 즉시 그 보호자 또는 사용자에게 경고를 발하고, 7 일을 경과하여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때 또는 2 회 이상 경고를 발하였을 때에는 그 전말을 아동의 거주지의 읍·면·동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 98 조에 따르면 읍·면·동의 장이 제 97 조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그 아동의 보호자에 대하여 아동의 취학 또는 출석을 독촉하거나 또는 그 사용자에게 대하여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를 하여야 하며, 독촉 또는 경고를 2 회이상하여도 여전히 그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읍·면·동의 장은 그 경과를 관할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교육장은 이를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여 교육감이 교육법 제 1642 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 아동의 의무 교육을 방해하는 자를 5 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57. 자의로 인한 학교 교육 탈락자를 예방하기 위하여 중학교 학칙 준칙 제 24 조, 고등학교 학칙 준칙 제 25 조에 의거하여 퇴학하려는 자도 그 사유를 보증인이 연서하여 학교장에게 출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중학교 학칙 준칙 제 13 조 2 항과 고등학교 학칙 준칙 제 14 조 2 항에 의거하여 각 학년도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3 분이 2 이상으로 규정하여 결석으로 인한 탈락방지에 강제규정을 삽입하고 있다.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대학 입시 전형시 고등학교 내신제 시행 지침에 의거하여 출석 성적을 내신 성적 총점이 10% 배정하여 병결이나 상고결을 제외한 임의적인 결석을 방지하고 있다.

## 제 2 절 교육의 목표 (협약 제 29 조)

159. 대한민국 교육법 제 1 조는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구유하게 하여 민주 국가 발전에 봉사하며 인류 공영의 이상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선언하고 있으며, 이에는 개인 윤리, 사회 윤리, 국가 윤리뿐만 아니라 국제 윤리까지 포함되어 있다.

160. 다음은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교육 방침들이다.

- 1) 신체의 건전한 발육과 유지에 필요한 지식과 습성을 기르며 아울러 견인 불굴의 기개를 가지게 한다.
- 2) 애국 애족의 정신을 길러 국가의 자주 독립을 유지 발전하게 하고 나아가 인류 평화 건설에 기여하게 한다.
- 3) 민족의 고유 문화를 계승 양양하며 세계 문화의 창조 발전에 공헌하게 한다.
- 4) 진리 탐구의 정신과 과학적 사고력을 배양하여 창의적 활동과 합리적 생활을 하게 한다.
- 5) 자유를 사랑하고 책임을 존중하며 신의와 협동과 애경의 정신으로 조화 있는 사회생활을 하게 한다.
- 6) 심미적 정서를 함양하여 숭고한 예술을 감상 창작하게 하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기며 여유 시간을 유효히 사용하여 화해 명량한 생활을 하게 한다.
- 7) 근검 노작하고 무실 역행하며 유능한 생산자요 현명한 소비자가 되어 건실한 경제 생활을 하게 한다.

## 제 3 절 여가, 오락 활동 및 문화적 활동(협약 제 31 조)

161. 아동복지법 제 10 조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는 아동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 공원, 놀이터, 아동회관, 체육, 연극, 영화, 과학 실험 , 전시 시설 등 아동 전용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하였으며, 어린이 현장에도 “어린이에게는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시설과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의 놀이는 그들의 삶을 구성하므로 정부는 위험에 노출됨이 없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안전한 시설과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52. 문화체육부는 입시 위주의 교육과 저급 대중 문화의 범람에 대비하여 청소년 문화의 올바른 정립을 위한 다양한 문예 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1992-1996 년 동안 1,394 개 소의 아동 전용 시설, 어린이 청소년회관,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 공원, 공연장, 전시장, 야영장, 숙박 휴양 시설, 체육관 등의 운영지원 및 아동 전용시설을 확충하고 장비를 보강할 계획이다.

163.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유교사상이 지배해 온 사회로써 아동은 부모의 예속적 존재로서 인식되어 가정 안에서는 양육의 대상일뿐 그 이상의 존재가 되지 못해 아동을 위한 문화가 만들어지기 어려웠다. 최근에 와서는 아동도 권리의 주체라는 의식이 사회의 저변에 확산되고 있으나, 아동을 위한 투자는 아직 미미한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정부는 문화 부문을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아동의 문화활동을 위한 각종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9. 제 8 장 특별 보호 조치

제 1 절 법적 준쟁상의 아동(협약 제 40 조, 제 37 조, 제 39 조)

가. 소년 형사 행정(협약 제 40 조)

164. 아동의 범죄 행위는 형법과 소년법에 의하여 다루어진다. 비행 소년들은 인격 형성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성숙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순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형벌보다 교육에 중점을 두고, 소년법 등에서는 소년의 비행을 일반 범죄와는 다르게 처리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소년 범죄에 대하여는 일반 형사 소추 절차에 의한 형사 처벌 이외에 비행 소년의 교육과 선도를 목적으로 한 보호 처분 등을 인정하고 있다. 죄질이 극히 불량하여 선도 및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범법 소년에 대하여는 선도 및 보호의 측면에서 교육적인 처우를 하고 있다. 여기에는 기소 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소년감별소를 통한 보호 처분 등이 있다.

165. 헌법 제 13 조 1 항은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여 형벌의 소급 적용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헌법상의 형벌 불소급의 원칙은 형법 제 1 조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동조는 위의 원칙을 재확인 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제한 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166. 헌법은 제 27 조 4 항에서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 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고 하여 무죄 추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 275 조의 2 도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종된다” 고 규정함으로써 형사피고인이 무죄추정은 형사 절차상의 확고한 기본 원칙으로 되어 있다. 또한 1989 년 9 월 1 일부터 시행된 형사 소송 규칙 제 118 조 2 항은 공소장에는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선임관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및 기타 물건을 첨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형사 실무상 무죄 추정의 원칙을 실효성 있게 담보하고 있다.

167. 헌법 제 12 조 5 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받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 .장소가 지체 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고 하여 구속 이유등 고지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 72 조는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 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밝히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 88 조는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즉시 공소 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규정은 동법 제 209 조에 의하여 검사 또는 사법 경찰관의 피의자 구속에 준용된다.

168. 무료 변호를 받을 피고인의 권리에 관하여는 헌법 제 12 조 4 항단서에서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는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고 하여 국선변호인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때, 또는 피고인이 기타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제 33 조).

169. 소년법 제 17 조는 “본인 또는 보호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얻어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 보호자 또는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여 형사 사건에서 필요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토록 한 규정과 마찬가지로 보조인을 선임토록 하고 있다.

170. 모든 사람은 “법앞의 평등 원칙 ‘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 11 조에 따라 재판에 있어서 평등하게 취급받는다. 더욱이 동법 제 27 조 1 항, 3 항과 동법 제 5 장(101-110 조)에서는 독립된 법원에 의한 공정한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동법 제 27 조 1 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제 27 조 3 항은 ”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고 규정하고 있다.

171. 헌법 제 12 조 2 항은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 7 항은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欺罔)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고 규정함으로써 의사에 반하는 강제 진술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고문·폭행·협박·구속에 의한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있다. 형사 재판에 있어서 법원은 임의성이 없는 자백과 보강 증거가 없는 불리한 자백을 유죄의 근거로 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 대하여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72. 형사소송법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상호간 아무런 차별없이 증거 조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재판장은 증거 조사 결과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을 묻고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증거 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일 법원의 증거 조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까지 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증인 신문에의 참여 및 신문권을 인정하고 있다.

173.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때에는 피고인을 퇴청하게 하고 진술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피고인은 법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의 신문을 청구할 수 있고, 만일 피고인에게 예기치 아니한 불이익한 증언이 진술된 때에는 그 진술 내용을 피고인에게 알려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형사소송법 제 310 조의 2 에서 규정하는바와 같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문(傳聞)증거의 증거 능력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반대 신문권은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

174. 헌법 제 101 조 1 항 및 2 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법원은 최고 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은 제 3 편에서 피고인의 항소, 상고, 항고 등 상소에 관하여, 제 4 편에서는 재심, 비상 상고 등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그가 받은 형사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 항소심에 항소할 수 있고 나아가 헌법과 법령에 위반된 것 등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까지 할 수 있으며, 유죄의 선고르 받아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고 그 증거가 무죄 등을 입증하는 경우 등에는 재심 청구도 할 수 있다.

175. “국어에 통하지 아니하는 자의 진술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 18 조, 법원조직법 제 62 조 제 2 항)고 규정하고 있고, 이외에도 농어나 맹인의 진술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할 수 있으며, 국어 아닌 문자 또는 부호는 번역하게 하여야 한다. 통역인의 일당, 여비, 숙박료, 등의 소송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176. 소년법 제 24 조 2 항은 “심리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판사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재석을 허락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여 아동의 사생활을 존중하되 적정한 심리를 위한 규정도 두고 있다. 조사 또는 심리 중에 보호 사건 또는 형사 사건에 대하여는 성명, 연령, 직업, 용모 등에 의하여 그 자가 당해 본인으로 주지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 또는 출판물에 게재 또는 방송할 수 없으면, 이를 위반한 때에는 신문은 편집인 또는 발행인, 출판물은 저작자와 발행자, 장송은 편집인과 방송인을 1 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 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177. 형법 제 8 조는 “14 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여 형사미성년자의 행위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함과 동시에 소년법 제 4 조 1 항 2 호는 “형법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2 세 이상 14 세 미만의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 사건으로 심리한다” 고 규정하여 보호 처분의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178. 소년법 제 32 조 3 항은 “보호관찰관의 보호 관찰 처분 혹은 단기 보호 관찰 처분을 받은 자에게 사회 봉사 명령 혹은 수강 명령을 동시에 명하라 수 있다.” 고 규정하여 형사 절차 이외의 선도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또한 법무부 훈령 제 88 호에 따라 각급 지방경찰청검사장에 의하여 임명된 검찰소년선도위원들의 선도 보호를 조건으로 소년범에 대하여 기소 유예 처분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소년범에 대하여 형사처벌이나 보호 절차로서 이행을 보류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179. 소년법 제 9 조는 “소년에 대한 조사는 의학, 심리학, 교육학, 사회학 기타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소년과 보호자 또는 참고인의 성행, 경력, 가정 상황 기타 환경 등을 구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여 소년비행이외에 소년의 선도 상황을 종합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있다. 소년법 제 12 조는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를 함에 있어서 정신과학자, 심리학자, 사회사업가, 교육자, 기타 전문가의 진단 및 소년감별소의 감별 결과의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여 소년에 대한 심도있는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소년법 제 58 조 1 항은 ” 소년에 대한 형사 사건의 심리는 친절하고 온화하게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여 소년 사건의 심리에 관하여 특별한 배려를 하고 있다.

180. 소년원생의 교화를 위해 소년원을 교과교육소년원, 직업훈련소년원, 특별소년원 등으로 기능별로 분류하여 운영하고 연령, 학력, 적성, 진로, 교정의 난이도 등에 따라 소년원생을 분류하여 수용하고 있는데 이는 악성 감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교과교육소년원에서는 교육법에 의한 초·중·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수업하여 학교 진학, 편입학을 장려하고 직업훈련소년원에서는 직업훈련기본 교육법에 의한 공공 직업 훈련을 실시하여 자동차 정비등 17 개 직종에 걸쳐 연간 700 명에게 기능사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고, 특별소년원에서는 특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 하나 집단 생활을 통하여 민주적이고 협동적인 생활태도를 기르기 위하여 학예, 체육, 근로봉사, 동식물 사육 등 활동이 가능한 분야를 선정하여 주 10 시간 특별 활동 지도를 시행하고 있다.

181. 가퇴원자에 대하여 집중적인 보호 관찰을 실시하고 취업 알선, 결연, 진학 등을 주선하여 사외적응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취업퇴원생에 대하여는 수시로 사후 지도를 통하여 직업적 부적응을 예방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나. 자유 박탈된 아동(협약 제 37 조 제 2 항, 3 항, 4 항)

182. 헌법 제 12 조 1 항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3 항에서는 체포, 구속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할 것을 규정함으로써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적법 절차의 원칙과 영장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183. 헌법의 규정과 정신에 따라 형사소송법은 구속의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제한하는 여러 규정들을 들고 있다. 즉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거나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피고인의 성명, 주거, 죄명, 공소사실의 요지, 인도 구금할 장소, 발부연월일,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회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할 취지를 기재하고 재판장이 서명 날인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뒤 이를 반드시 피고인에게 제시하고 구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84.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한 피의자 구속의 경우에도 검사의 청구로 법관이 발부한 구속 영장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 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거나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을 요하는 판사의 구속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동법 제 206 조), 또는 현행 범인이나 준 현행 범인인때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사전 영장 없이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으나 48 시간 또는 72 시간 이내에 법관으로부터 사후 영장을 발부 받지 못한 경우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도록 함으로써 사후에 충분히 사법적 통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185. 소년에 대한 형사 사건의 심리는 다른 피의 사건과 관련된 경우에도 심리에 지장이 없으면 그 절차를 분리하여야 한다. 소년법에 따르면 소년범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 형사 사건과 다른 절차를 취하여 특별한 대우를 받도록 하고 있다.

186. 행형법에 따라 20 세 미만의 수형자는 소년교도소에 수용되며 20 세이상의 수형자는 교도소에 수용된다. 예외적으로 성인과 소년 수형자가 같은 교도소에 수용되더라도 분리되어 수용된다.

187. 소년원법 제 8 조에 의하면 “남자와 여자는 분리 수용하고 16 세미만의 자와 16 세 이상의 자는 분리 수용한다” 고 규정하여 비행성의 오염을 차단하고 있다. 그리고 신입 소년에 대해선 일반 보호 소년과 분리 수용하고, 10 일간에 걸쳐 분류 조사를 실시하며, 분류조사의 결과에서 밝혀진 제사실과 감별 결과를 종합하여 보호소년처우심사위원회에서 분리 수요, 처우 기간, 교육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심의 결정한다.

188. 대한민국은 전국에 잇는 11 개 소년원을 기능별로 4 개의 교과 교육 3 개의 직업훈련 1 개의 여자, 2 개의 특별, 그리고 2 개의 종합 소년원으로 분류하여 운영하고, 보호 소년의 성별, 연령, 입원회수, 공범 유무, 비행의 질, 처우 기간, 교육 과정 등에 따라 시설을 달리하거나 동일 시설 내에서 구획하여 분리 수용한다.

189. 보호 소년 도는 위탁 소년의 보호 및 교정 교육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서 면회를 허가하고 있으며, 서신은 그 회수와 대상에는 제한이 없으나 서신 검열을 하여 그 내용이 교정 교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서신 수발을 제한하도록 하여 소년의 교화와 사생활의 조화를 꾀하고 있다.

보호 소년 직계가족의 경조사 등 교정 교육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외출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가족과의 관계개선을 도모하고 사회 적응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고 있다.

190. 헌법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형사소송법은 모든 범죄에 대하여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 법원으로 하여금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임하도록 규정하여 법률구조 능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미성년자를 특별히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191. 최근 5 년 간에 나타난 소년 범죄는 1989 년까지 계속 증가하다가 1990 년이 후에는 조금씩 줄고 있다. 1992 년에 발생한 소년 범죄는 전체 범죄의 6.4%를

차지하였으며, 그 중 27.5%만이 기소되었다. 일반 범죄와 비교해 볼 때 소년범의 기소 유예율이 일반 범죄보다 25%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15> 청소년 범죄 구성비 (단위: 건,%)

구분	1988	1989	1990	1991	1992
총범죄	1,144,702	1,337,587	1,402,417	1,540,914	1,542,035
소년범죄	104,052	108,015	105,567	102,537	99,301
구성비(%)	9.1	8.1	7.5	6.7	6.4
기소율(%)	39.4	39.3	36.9	39.3	27.5

다. 아동에 대한 사형 및 종신형 금지(협약 제 37 조 제 1 항)

192. 헌법은 고문과 관련된 여타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사형은 형법과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소년법에선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이 18 세이며 18 세 미만인 소년이 죄를 범하여 사형 또는 무기 징역 에 처할 경우에는 15 년의 유기 징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사회 복귀 지원(협약 제 39 조)

193. 갱생 보호 활동은 형사 처분 도는 보호 처분을 받고 소년교도소나 소년원 등에서 성행 교정에 대한 수요 과정을 마치고 사회에 복귀한 자에게 사회 환경적 장애로 인하여 재비행에 빠질 것을 우려하여 사회적응 및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를 말한다.

비행 청소년이 갱생 보호는 법무부 산하에 있는 갱생보호회가 담당하고 있는데, 갱생 보호회는 중앙에 본회가 있고 서울을 비롯한 각시, 도에 12 개 지부와 전국의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감호소 등 52 개소에 지소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중소기업가를 중심으로 한 취업보도협의회 등 갱생 보호 사업 후원회가 조직되어 취업 알선, 의료 시혜, 재정 지원 등의 방법으로 갱생 보호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그 보호의 내용은 숙식 제공, 여비 지급, 취업 훈련, 취업 알선, 생업 조성금 지급, 관찰 보호, 기타 자립 지원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 2 절 착취상황하의 아동

가. 경제적 착취(협약 제 32 조)

194. 근로기준법은 소년 노동자 관련된 많은 규정을 담고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3 세 이상인 자만을 고용할 수 있으며 18 세미만인 자를 연소 근로자로 보호하고 있다. 13 세 미만자가 취업을 희망할 경우에는 의무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노동부장관이 직종을 지정하여 취직인허증을 발급하고 있다. 취득 인허의 금지 직종으로는 18 세 미만연소 근로자의 사용금지 직종은 물론, 오락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숙박·요식업소 업무, 엘리베이터의 운전업무 등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직종 등이 있다. 18 세 미만자는 갱내 작업, 고압 전기 기구 취급, 5 미터 이상의 땅굴에서의 업무, 진동이 심한 업무, 20 킬로그램 이상의 중량물 취급업무 등 유해, 위험 직종에 대해 고용을 제한하고 있다.

195. 18 세 미만 연소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 시간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데 일반 근로자는 1 일 8 시간, 1 주일에 44 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는 반면, 18 세 미만 연소 근로자는 1 일 7 시간, 1 주일에 42 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연장 근로가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일반 근로자는 1 일 12 시간 범위 내에서 가능한 반면, 18 세 미만 연소 근로자는 1 일 1 시간, 1 주일에 6 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특별 보호를 하고 있다. 일반근로자와는 달리 18 세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야업 근로(하오 10 시부터 상오 6 시 사이)와 휴일 근로를 금지하고 있다.

196. 연소 근로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 계약과 최저 임금을 보호하고 있다. 친권자 등은 아동의 근로 계약을 대리할 수 없으며, 친권자 또는 노동부장관은 근로 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할 경우에는 향후 이를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8 세 미만 근로자도 취업 기간이 6 개월을 경과한 이후에는 최저임금법의 보호를 받도록 규정하여, 연소 근로자들의 최저 임금을 보호하고 있다.

197. 연소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 12 장에 각각 벌칙 규정을 두고 있으며, 아동 특별 보호 규정의 준수를 위해 전국의 45 개 지방 노동 관서가 5 인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 및 감독하고 있다.

198. 1992 년 4 월 현재 32,952 명의 18 세 미만 아동이 근로 활동에 참가 하고 있다. 이 중 13 세 미만의 연소 근로자는 118 명(남자 27 명, 여자 91 명)이며, 14-17 세의 연소 근로자는 32,834 명(남자 3,846 명, 여자 28,988 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0.6%가 18 세 미만의 연소 근로자이다. 이들연소 근로자의 95.2%가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다.

#### 나. 마약(협약제 33 조)

199. 마약의 불법 사용, 생산 거래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14 세 미만자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을 판매한 자에 대하여는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아편, 몰핀 또는 그 화합물을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으로써 마약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전력하고 있다.

200. 마약관리법은 허가 없이 대마의 수입, 수출, 제조, 매매 또는 매매 알선,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와 이러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 시설, 장비, 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그 위반자에 대하여는 상습범 등의 경우 최고 사형 무기 또는 10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201.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 보호를 실시하여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국에 17 개소의 국·공립병원과 5 개의 민간 병원을 마약류 중독자 전문 병원으로 지정하여 마약류 중독자를 무료 치료하고 있으며 , 마약류 중독자의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치료와 재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 병상 규모의 국립 마약류 중독자 전문치료센터를 건립중에 있다. 정부의 노력으로 마약 사범은 감소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본드나 가스 등의 흡입제와 같은 유해화학 물질 중독이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1992 년에 행해진 청소년 의 약물 남용실태 조사에 따르면, 치료적 개입이 필요한 청소년의 약물 사용자는 4 만 5 천명에서 8 만 8 천명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들의 치료를 전담하는 정부의 주무 부서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약물 사용자는 정신과에서 치료가 가능하나, 마약 중독이 의료 보험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치료 기관의 이용이 용이하지 않다.

#### 다. 성적 착취와 학대(협약 제 34 조)

202. 형법은 성적 착취와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미성년 또는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매개하여 간음 하게 한 자는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아동복지법은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시키는 행위자에 대하여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3. 윤락행위등방지법은 윤락 행위를 금지하고, 윤락 행위의 상대자가 되기를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행위 및 윤락 행위를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그 처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최고 3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4. 풍속 영업이 규제에 관한 법률은 풍속 영업소에서 윤락 행위 또는 음란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최고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2 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5. 형법은 반포(頒布)또는 판매 등의 행위에 제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아동용을 이용한 외설물 제작 등을 금하고 있다.

라. 기타 형태의 착취(협약 제 36 조)

206.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전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건강하게 육성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①불구기형의 아동을 공중에게 관람시키는 행위, ②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③공중 오락, 흥행 목적으로 14 세 미만 아동에게 곡예를 시키는 행위,④14 세 미만 아동을 주점 기타接客 영업에 종사시키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최고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 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